

(원화/외화) 발행어음 약관 신구조문대비표(2023.10.12개정)

현 행	개 정(안)	비고
<p>제 12 조(관할법원)</p> <p>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.</p>	<p>제 12 조(관할법원)</p> <p>① 발행어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방문판매/비대면을 통한 계약에 대한 제소 시, 고객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내용 추가</p>